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·운영중인 고리원전 지역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현장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4급인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을 본부 3·4급 정원과 이체·배정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원 1명(5급 1명)을 지역사무소로 재배치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 단서 중 “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”을 “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”으로, “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,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서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 1 총계 “122”를 “121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21”을 “120”으로 하며,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간호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 “39”를 “38”로 한다.

별표 2 총계 및 일반직 계 “33”을 각각 “34”로 하고,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 “16”을 “17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운영하는 서기관·기술서기관
· 행정사무관·통계사무관·공
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해양수
산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
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
· 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
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
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.

-----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
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,
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같은
규정에 따라 서기관-----

-----.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8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122</u>	<u>121</u>	-1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121</u>	<u>120</u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 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 관 · 수의사무관 · 해양수산사무 관 · 기상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 관 · 의무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간호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 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 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연구관	<u>39</u>	<u>38</u>	-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2]

지역사무소 공무원 정원표(제9조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33</u>	<u>34</u>	+1
일반직 계	<u>33</u>	<u>34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 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해양수산 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보건사무 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연구관	<u>16</u>	<u>17</u>	+1
·	·	·	
·	·	·	